



기금운용심의회 규정

규정번호	KTC-F-22	1/2
제정일자	2023.3.30	
개정일자		
관리부서	기획처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강원관광대학교의 기금운용심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
1. 기금 관리, 운용에 관한 사항
2.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사항
3. 기타 기금 운용, 관리 관한 주요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.

1. 기획처장, 교학처장
2. 직원2명, 학생2명
3. 외부위원: 회계 또는 재무관련 외부전문가 1명
4. 간사는 기획처 직원1명


제4조(임기)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②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.
- ③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,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

제7조(비밀 유지) 위원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며,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, 심의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경비)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	<h1>기금운용심의회규정</h1>	규정번호	KTC-F-22	2/2
		제정일자	2023.3.30	
		개정일자		
		관리부서	기획처	

제9조(기타) ①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을 따른다.

② 기타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 부터 시행한다.